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44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김승수・박충권・추경호
안상훈・서천호・강명구
엄태영・서범수・정동만
김정재・이상휘・김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수정・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

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제2호 중 “통보”를 “2일 이내 통보”로 한다.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4제2호의3 중 “통보”를 “2일 이내 통보”로 한다.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제2항 중 “통보”를 “2일 이내 통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2의2. (생 략)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 5. (생 략)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 1. (현행과 같음) 2. ----------2일 이내 통보----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2일 이내 통보----- 3. ~ 5.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생 략)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2일 이내 통보----------. ③ · ④ (현행과 같음)